

정보조작대처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¹⁾

1. 사건개요

2018년 11월 20일 일정한 선거 기간 동안 거짓 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보조작에 대처하는 것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정보조작대처법률’이라 함)이 프랑스 하원에서 가결되었다. 이에 일부 하원의원들과 상원의원들은 프랑스 헌법 제61조 제2항²⁾의 규정에 따라 ‘정보조작대처법률’에 대한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였다.³⁾

2. 판단

[제1조에 대하여]

(1) 정보조작대처법률 제1조는 선거법전에 하원선거, 상원선거 및 유럽연합선거, 국민투표 및 (정보조작대처법률에 관한 조직법률에 따라) 대통령 선거에도 적용되는 제L.112조⁴⁾, 제L.163-1조⁵⁾ 및 제L.163-2조⁶⁾를 새롭게 규정하

1) Décision n° 2018-773 DC du 20 décembre 2018.

2) 프랑스 헌법 제61조 ① 조직법률은 공포되기 전에, 헌법 제11조에서 언급된 법률안은 국민투표에 회부되기 전에, 의회의 의사규칙은 시행되기 전에 헌법재판소에 회부된다. ②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대통령·수상·하원의장·상원의장·60인의 하원의원·60인의 상원의원은 법률이 공포되기 전에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1개월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단, 정부의 요구에 따라 긴급한 경우, 그 기간은 8일로 단축된다. ④ 제1항, 제2항, 제3항의 경우, 헌법재판소에 대한 청구는 공포기간의 진행을 중단시킨다.

3) ‘정보조작대처법률’에 관한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의 청구는 i) 2018년 11월 21일에 공화파의 상원의원들, ii) 2018년 11월 29일에 사회당과 등의 좌파 하원의원들, iii) 2018년 11월 30일에 사회당파의 상원의원들이 제기하였다.

4) 선거법전 제L.112조 “선거법전 제L.163-1조에 대한 일체의 위반은 1년의 금고와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 제1항에 규정된 위반에 대해, 형법전 제121-2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형사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선고된 법인은 형법전 제131-38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른 벌금 외에도 형법전 제131-39조 제2° 및 제9°에 규정된 형벌을 받는다. 형법전 제131-39조 제2°에 규정된 금지는 최고 5년의 기간 동안 선고되며, 위반행위가 행해진 회계연도 또는 시기의 직업적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였다. 제L.163-1조는 투표일까지 3개월의 기간 동안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공익적 토론과 관련된 정보의 내용”의 촉진과 관련하여 투명성의 의무를 부과한다. 제L.112조는 이와 같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제L.163-2조는 거짓 정보(fausses informations)가 선거의 진실함을 변질시킬 수 있을 때, 투표일까지 3개월의 기간 동안 온라인 공공통신서비스에 거짓 정보의 유포를 중단하도록 명하는 가처분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

- 선거법전 제L.112조 및 제L.163-1조와 관련하여

(2) 청구인들은 선거법전 제L.112조 및 제L.163-1조에 대해서 그 위반시 제재를 받는 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공익적 토론과 관련된 정보의 내용”의 개념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개념의 폭이 광범위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투명성 의무는 기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도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

5) 선거법전 제L.163-1조 “총선거가 있는 달의 첫째 날 이전부터 총선거의 투표일까지 3개월 동안 프랑스에서 일정한 접속수를 초과하는 소비법전 제L.111-7조의 의미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선거 기간 동안에 시민들의 명확한 정보(information éclairée)와 선거의 진실함(sincérité)과 관련된 공익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사용자에게 개인의 신원(신분) 또는 법인과 어떤 법인을 대리하여 플랫폼에 공익적 토론에 관련된 정보내용의 촉진을 대가로 사례금을 지불하는 법인의 상호, 소재지, 사회적 목적에 대한 올바르게,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사용자에게 공익적 토론에 관련된 정보내용의 촉진의 범주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의 사용에 대한 올바르게,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 이와 같은 정보의 내용의 촉진의 대가로 받는 사례금의 액수는 어떤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공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보는 공개적 포맷으로 전자적 수단을 통해 대중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기억장치에 결집되어야 하며, 본조 제1항에서 언급된 기간 동안 규칙적으로 공개된다. 본조의 적용방식은 데크레로 정한다.”; 소비법전 제L.111-7조 “I.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직업으로서 1° 정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제3자가 제안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한 내용(콘텐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분류 또는 인용, 2° 또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또는 내용(콘텐츠),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 또는 공유를 목적으로 여러 당사자와 관계를 맺는 것에 기반한 온라인 공공통신서비스를 제안하는 일체의 자연인 또는 법인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라고 한다.”

6) 선거법전 제L.163-2조 “I 총선거가 있는 달의 첫째 날 이전부터 총선거의 투표일까지 3개월 동안 도래할 선거의 진실성을 변질시킬 수 있는 어떤 사실에 대한 부정확하거나 거짓의 주장 또는 비난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고의로, 작위적으로 또는 자동화 및 대량으로 유포되는 경우, 가처분 판사는 검사, 모든 후보자, 모든 정당 또는 정치단체 또는 소송의 이익이 있는 모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받은 손해에 대한 배상과 관계없이,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를 위한 2004년 6월 21일의 법률(n°2004-575) 제6조 I의 2 또는, 그 외에는, 동조 I의 1에서 규정한 일체의 사람에 대해 이와 같은 유포를 중단시키기 위한 비례적이고, 필요한 일체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II. 가처분판사는 제소 후 48시간 내에 선고한다. 항소가 있는 경우, 항소법원은 제소 후 48시간 내에 선고한다. III. 본조에 근거한 소송은 데크레가 정하는 지방법원 및 항소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3) 1789년 인권선언 제8조는 “법률은 완전히 그리고 명백히 필요한 형벌만을 규정하여야 하며, 어느 누구도 범죄행위 이전에 제정 및 공포되고, 합법적으로 적용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한다. 헌법 제34조는 “법률은 …중죄 및 경죄 그에 대한 형벌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입법자는 헌법 제34조 및 1789년 인권선언 제8조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법의 적용영역을 스스로 정하고, 자의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명백하고, 분명한 표현으로 중죄와 경죄를 규정할 의무가 있다.

(4) 1789년 인권선언 제4조에서 도출되는 기업의 자유에 대해 입법자는, 추구하는 목적과 관련하여 과도하지 않은 침해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헌법적 요청과 관련되거나 공익에 의해 정당화되는 제한을 가할 수 있다.

(5) 제L.163-1조는 프랑스 본토에서 일정한 접속수를 초과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올바르고,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는 온라인 서비스에 공익적 토론에 관련된 정보내용의 축진을 대가로 사례금을 지불하는 개인의 신분 및 법인의 상호, 데크레에 의해 규정된 일정한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례금의 액수, 이와 같은 축진의 범주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사용을 그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와 같은 정보는 대중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기억장치에 결집되어야 하며, 3개월의 선거 기간 동안 규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6) 제L.112조는 특히 선거법전 제L.163-1조의 위반에 대해 1년의 금고와 75,000유로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7) 첫째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된 의무는 위에서 언급한 선거 및 투표가 있는 달의 첫째 날 이전부터 선거 및 투표를 하는 날까지 3개월

만 부과되며, 선거 기간 동안 시민들의 명확한 정보 및 선거의 진실함과 관련된 공익의 관점에서만 부과되었다. 따라서, 선거법전 제L.163-1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익적 토론과 관련된 정보의 내용은 선거운동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의 내용이며, 이와 같은 개념에 대한 규정은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지 않았다.

(8) 둘째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단지 일정한 규모를 초과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자신들이 사례금을 받고 선거 운동과 관련성이 있는 일정한 정보내용을 촉진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그친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시민들에게 전달받은 정보의 가치 또는 효력을 평가할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선거와 관련된 토론의 투명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선거법전 제L.163-1조가 추구하는 공익적 목적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된 의무의 제한적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선거법전 제L.163-1조는 기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 할 것은 아니다.

(9) 따라서 선거법전 제L.112조 및 제L.163-1조는 다른 헌법적 요청도 위반하지 않았으며, 헌법에 합치한다.

- 선거법전 제L.163-2조와 관련하여

(10) 청구인은 i) 다른 여러 법률규정을 통해 입법자가 추구하는 목적에 이미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선거법전 제L.163-2조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불필요한 침해를 하며, ii) 이와 같은 행동수단을 실시하는 것의 위험성, 판사가 48시간 내에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 및 아직 도래하지 않은 선거의 진실성이

변화될 위험에 근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어려움을 이유로 이와 같은 침해는 적합하지도 않으며, iii) 정치적 토론 및 선거 운동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특별한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이와 같은 침해는 과도하며, iv) 선거법전 제L.163-2조는 선거에 대한 효과가 불확실하거나, 선거의 진실성에 해를 끼치려는 고의가 드러나지 않은 발언의 배포를 억제할 것이며, v) 입법자가 채택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 정보가 아닌 풍자적 발언이나 단순한 거짓 또는 잘못된 발언이 가처분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1) 그리고 청구인들은 i) 입법자가 문제가 되는 발언의 배포를 중단시키기 위해 가처분 판사가 선고하는 조치들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권한의 범위를 위반하였으며, ii) 거짓 정보 및 선거의 진실성에 대한 침해를 규정하기 위해 채택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12) 마지막으로, 청구인들은 i) 가처분 절차는 방어권과 공정한 소송권을 위반하였으며, ii) 가처분 판사와 항소법원이 결정을 하는데 48시간을 부여한 것은 원활한 사법행정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목적 및 권리의 보장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13) 1789년 인권선언 제11조는 “사상 및 견해의 자유로운 통신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저작하고, 출판할 수 있다. 단, 모든 시민은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만 이러한 자유의 남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한다. 헌법 제34조는 “법률은 … 시민적 권리 및 공적 자유의 행사를 위해 시민에게 부여된 기본적 보장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헌법규정에 근거하여 입법자는 자유로운 통신의 권리 및 말하고, 저작하고, 출판하는 자유의 행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또한 입법자는, 이와 같은 자격에 따라, 공적

질서 및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같은 표현 및 통신의 자유의 행사가 남용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14) 그렇지만, 표현 및 통신의 자유는 그 행사가 민주주의의 하나의 조건이며, 다른 권리 및 자유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는 수단 중의 하나인 만큼 더욱 더 소중하다. 특히 온라인 공공통신서비스의 일반화된 발전 및 민주주의적 생활에의 참여와 사상 및 견해의 표현을 위한 온라인 공공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통신 수단의 현재의 상황, 온라인 공공통신서비스를 수단으로 한 통신수단의 행사를 고려할 때 표현 및 통신의 자유는 더욱 더 소중하다. 따라서, 표현 및 통신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그 추구하는 목적에 필요하고, 적합하고, 비례적이어야 한다.

(15) 헌법 제3조 제3항은 “선거는 헌법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 선거로 할 수 있다. 선거는 항상 보통·평등·비밀 선거로 시행된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헌법규정에서부터 선거의 진실성 원칙이 도출된다.

(16) 선거의 진실성이라는 헌법적 원칙과 표현 및 통신의 자유라는 헌법적 자유 간의 조화를 시키는 것은 입법자의 권한이다.

(17) 첫째로, 입법자는 선거의 진실성을 침해할 수 있는 일정한 거짓 정보의 배포를 중단시키기 위한 가처분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온라인 공공통신서비스 상에서 이와 같은 정보의 대량적 유포를 통해 시민들이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속거나, 조작될 위험에 대처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입법자는 선거관련 토론의 명확성 및 투표의 진실성 원칙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18) 둘째로, 입법자는 가처분 절차의 적용을 3개월의 선거 운동 기간 또

는 국민투표 기간으로 제한하였다.

(19) 셋째로, 가처분 절차는 온라인 공공통신서비스 상에 공개된 내용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온라인 공공통신서비스는 증식성 및 그 특별한 내용 배포의 방식 때문에 대량의 조직된 조작에 보다 용이하게 노출된다.

(20) 넷째로, 입법자는 다투어지는 가처분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엄격하게 정했다.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절차는 다가올 선거의 진실성을 변질시킬 수 있는 부정확하거나 거짓된 주장 또는 비난만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장 또는 비난은 견해, 풍자, 부분적인 부정확함, 또는 단순한 과장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주장 또는 비난은 객관적으로 그 오류를 증명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3개의 병합적 조건을 충족하는 이와 같은 주장 또는 비난의 유포만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주장 또는 비난의 유포는 작위적 또는 자동화되어, 대량으로 그리고 고의적이어야 한다.

(21) 그렇지만,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토론 및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다. 표현의 자유는 각자의 정보 및 모든 견해의 방어를 보장하지만, 반박하고 남용의 결과를 알리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의 토대 위에서 행해진 남용의 결과를 대비한다.

(22) 그러므로, 일정한 정보 내용의 배포를 중단하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절차의 결과를 고려할 때, 문제가 되는 주장 또는 비난은 그 부정확하거나 거짓된 특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이와 같은 어떤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다. 선거의 진실성을 변질시킬 위험의 경우도 명백해야 한다.

(23) 다섯째, 비록 청구인들이 가처분 절차의 실시와 관련된 위험성을 다 두고 있지만, 이와 같은 가능성만으로 가처분 절차를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24) 마지막으로, 입법자는, 가처분 판사에게 잘못된 정보의 배포를 중단하기 위한 일체의 비례적 및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처분 판사에게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가장 적게 침해하는 조치를 결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25) 따라서 판사이유 237)의 한정적 해석의 유보 하에 선거법전 제L.163-2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하지 않았으며, 방어권 및 공정한 소송에 대한 권리, 원활한 사법행정 및 권리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목적, 그리고 다른 헌법적 요청도 위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유보 하에, 선거법전 제L.163-2조는 헌법에 합치한다.

[제5조에 대하여]

(26) 정보조작대처법률 제5조는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33-1조 I에 다음과 같은 두 개의 항을 보충한다.

(27)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33-1조 I의 끝에서 두 번째 항⁸⁾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서비스의 방송이 인간의 존엄성, 타인의 자유 및 재산, 사상 및 견해의 흐름에 대한 표현의 다원주의적 성격, 어린이와 청소년의 보호,

7) 본문에서는 (22)에 해당됨.

8)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33-1조 I의 끝에서 두 번째 항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서비스의 방송이 인간의 존엄성, 타인의 자유 및 재산, 사상 및 견해의 흐름의 표현의 다원주의적 성격, 어린이와 청소년의 보호, 공적 질서의 보호, 국방의 필요성 또는 국가의 기본적 이익(여기에는 제도의 정상적 기능이 포함됨)에 대한 심각한 침해의 위험을 포함하는 경우에, 고등시청각위원회는 협약의 체결에 관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서비스 방송이 그 성격과 관련하여 현재 효력이 있는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공적 질서의 보호, 국방의 필요성 또는 국가의 기본적 이익(여기에는 제도의 정상적 기능이 포함됨)에 대한 심각한 침해의 위험이 포함하는 경우에, 고등시청각위원회에게 협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규정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서비스 방송이 그 성격과 관련하여 현재 효력이 있는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고등시청각위원회에게 협약의 체결을 거부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8)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33-1조 I의 마지막 항⁹⁾은 협약의 체결이 상법전 제L.233-3조¹⁰⁾의 의미로 외국에 의해 통제되거나, 외국의 영향 하에 있는 법인에 의해 요구된 경우, 고등시청각위원회는 이와 같은 요구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청구인, 청구인의 자회사, 청구인을 통제하는 법인 또는 이 법인의 자회사가 전자적 방법을 통해 다른 공공통신서비스에 대해 편집하는 내용(콘텐츠)을 고려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29) 청구인들은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33-1조 I의 끝에서 두 번째 항은 i) 사전적으로 행정적 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ii) “공적 질서의 보호”, “국가의 기본적 이익” 및 “그 성격과 관련하여 현재 효력이 있는 법률을 위반하는” 어떤 서비스의 방송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입법부작위(*incompétence négative*)와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였으며, iii) 고등시청각위원회의 협약에 대한 체결 거부는 하나의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지만, 입법자는 그 절차의 범주에서 “해당되

9)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33-1조 I의 마지막 항 “협약의 체결이 상법전 제L.233-3조의 의미로 외국에 의해 통제되거나, 외국의 영향 하에 있는 법인에 의해 요구된 경우, 고등시청각위원회는 이와 같은 요구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청구인, 청구인의 자회사, 청구인을 통제하는 법인 또는 이 법인의 자회사가 전자적 방법을 통해 다른 공공통신서비스에 대해 편집하는 내용(콘텐츠)을 고려할 수 있다.”

10) 프랑스 상법전 제L.233-3조 “I.- 본 장 제2섹션 및 제4섹션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모든 법인 또는 자연인은 타인을 통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해당 회사 총회의 투표권의 과반수를 부여하는 자본의 일부를 소유하는 경우, 2°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이 다른 관련 회사 또는 주주와 체결한 협정에 근거하고, 회사의 이익에 반하지 않으면서, 해당 회사의 투표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 3°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투표권을 통해 사실상 해당 회사 총회의 결정을 정하는 경우, 4°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이 해당 회사와 관련되거나, 주주이면서 해당 회사의 경영, 관리 및 감독 기관의 구성원 다수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경우.”

는 사람에 대한 이유통지”, 대심제도, 선고된 제재를 조정할 여지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어권, 효과적인 사법적 소송에 대한 권리 및 형벌개별화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0) 또한, 청구인들은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33-1조 I의 마지막 항이 i) 외국에 의해 통제되거나, 외국의 영향 하에 있는 법인과 다른 법인들을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법률 앞의 평등원칙을 위반하였으며, ii) 외국의 “영향 하에 있는” 법인의 개념을 불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입법부작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33-1조 I 끝에서 두 번째 항과 관련하여

(31) 첫째로, 기술의 제어와 경제적 필요성을 모두 고려하면서, 1789년 인권선언 제11조의 통신의 자유의 행사와 시청각 통신에 내재한 구속 및 통신의 방법이 그 영향력에 의해 침해할 수 있는 공적 질서의 보호, 타인의 자유의 존중 및 사회문화적인 표현 흐름의 다원적 성격의 보존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목적 간의 조화를 하는 것은 헌법 제34조에 따라 입법자의 권한이다. 이와 같은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입법자는 여러 부류의 시청각 통신서비스에 대해 행정적 허가제를 규정할 수 있다.

(32) 한편으로, 입법자는, 고등시청각위원회에게 판시이유 제28¹¹⁾에서 언급한 사유들 중의 하나의 사유를 이유로 협약체결의 요구를 거부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시청각 또는 무선통신을 수단으로 공적 질서, 타인의 자유 또는 사회문화적 표현의 흐름의 다원주의적 성격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포함하는 정보에 대한 일체의 배포를 방지하고자 했다.

(33) 다른 한편으로는, “공적 질서의 보호”, “국가의 기본적 이익”에 대한

11) 본문에서는 (27)에 해당됨.

침해의 심각한 위험과 관련된 이유는 습관적으로 입법자가 사용하고, 판사가 적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떠한 불명함도 없다. 입법자는 어떤 서비스의 방송이 “그 성격과 관련하여 현재 효력이 있는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 고등시청각위원회에게 협약의 체결을 거부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어떤 프로그램이 원칙적으로 불법적이거나 불법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송 서비스가 허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34) 따라서, 입법자는 자신의 권한 범위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위에서 언급한 헌법적 요청과 표현 및 통신의 자유 간의 균형적인 조화를 수행하였다.

(35) 둘째로, 협약체결을 거부하는 고등시청각위원회의 결정은 행정법원에서 다투어질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소송의 행사에 대한 권리는 침해되지 않았다.

(36) 마지막으로, 고등시청각위원회의 협약체결의 거부는 처벌적 성격을 가지는 제재가 아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와 형벌개별화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7) 요컨대,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33-1조 I의 끝에서 두 번째 항은 방어권, 효과적인 소송에 대한 권리 등 어떠한 헌법적 요청도 침해하지 않았고, 헌법에 합치된다.

-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33-1조 I 마지막 항과 관련하여

(38) 첫째로, 1789년 인권선언 제6조에 따르면, “법률은 보호하든지, 처벌하든지, 만인에 대해서 동일해야 한다.” 평등원칙은 입법자가 다른 상황을 다르게 규정하는 것, 평등의 위반을 통한 차별적 취급이 법률의 목적과 직접

적 관련성을 가지는 이상, 공익을 이유로 평등을 위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39)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33-1조 I 마지막 항은 고등시청각위원회가 협약의 체결요구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외국에 의해 통제되거나, 외국의 영향 하에 있는 법인 그리고 이들 법인의 자회사가 전자적 방법을 통해 다른 공공통신서비스에 대해 편집하는 내용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외국에 의해 통제되는 법인 또는 외국의 영향 하에 있는 법인과 다른 법인을 다르게 취급한다.

(40) 입법자는 이와 같은 규정을 통해 외국에 의해 통제되거나, 외국의 영향 하에 있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서비스의 방송에서 비롯되는 공적 질서에 대한 침해의 예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입법자는 외국에 의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되는 미디어에서 유래된 불안정화의 시도가 초래하는 특별한 중대성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법률 앞의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배척되어야 한다.

(41) 둘째로, 입법자는,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33-1조 I 마지막 항을 상법전 제L.233-3조의 의미의 어떤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만이 아니라, 어떤 법인이 외국의 영향 하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외국이 법적으로 또는 사실적으로 자신의 결정을 강제할 수 있는 일체의 법인에 대해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33-1조 I 마지막 항이 적용되도록 규정하였다. 입법자는 자신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

(42) 요컨대,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33-1조 I 마지막 항은 어떠한 헌법적 요청도 위반하지 않았으며, 헌법에 합치한다.

[제6조에 대하여]

(43) 정보조작대처법률 제6조는 기존에 있던 1986년 9월 30일 법률에 새로운 제33-1-1조¹²⁾를 추가하였다. 새롭게 규정된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33-1-1조는 선거 기간 동안 거짓 정보가 유포된 경우에 고등시청각위원회에 게 외국에 의해 상업법전 제L.233-3조의 의미로 통제되거나, 외국의 영향 하에 있는 법인과 체결된 협약의 대상이 되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서비스의 유포를 중단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44) 청구인들은 선거가 연속되는 경우 고등시청각위원회의 유포중단권은 오랜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으며, “거짓 정보”(fausses informations)의 개념은 기자의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확인될 수 없는 실수, 근사치 또는 어떤 정보를 고려하도록 하기 때문에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33-1-1조는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45) 그리고 청구인들은 입법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국의 통제 하에 있거나, 영향 하에 있는 법인과 다른 법인들을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46) 또한, 청구인들은 i)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고등시청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시간을 48시간만 부여함으로써, 입법자는 방어권을 침해하였으며, ii) 완전한 소송을 할 권리가 규정되지 않고, 이와 같은 결정을 중단시킬

12)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법률(n°86-1067) 제33-1-1조 “대통령 선거, 하원총선거, 상원선거, 유럽의회선거 및 국민투표가 있는 달의 첫째 날 이전부터 총선거의 투표일까지 3개월 동안, 고등시청각위원회는 외국에 의해 상업법전 제L.233-3조의 의미로 외국에 의해 통제된 또는 외국의 영향 하에 있는 법인과 체결된 협약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가 고의로 선거의 진실성을 변질시킬 수 있는 거짓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확인하였을 때, 이와 같은 방해를 예방하거나 중단시키기 위해, 투표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일체의 전자통신적 방법을 통해 이와 같은 서비스의 유포중단을 명할 수 있다. 고등시청각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실이 본 조에 규정된 절차의 개입을 정당화한다고 판단할 때, 문제가 되는 사람에게 그 이유를 통지한다. 문제가 되는 사람은 이와 같은 통지후 48시간 내에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 항은 대중과 행정부간의 관계법전 제 L.121-2조 1°과 2°에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내려진 고등시청각위원회의 결정은 이유가 부가되며, 문제가 된 사람 및 프랑스에서 이와 같은 서비스의 유포를 보장하고, 중단조치의 집행을 보장해야 하는 배포자 또는 위성사업자에게 통지된다.”

수 있는 절차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효과적인 소송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iii) 고등시청각위원회의 중단결정이 조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형벌개별화의 원칙 또한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47) 마지막으로, 청구인들은 고등시청각위원회의 중단권이 종속되는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며, 충분한 절차적 보장이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33-1-1조는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표현 및 통신의 자유의 침해와 관련하여

(48) 첫째로,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33-1-1조를 규정함으로써 입법자는 외국에 의해 통제되거나, 외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에서 거짓 정보가 유포됨으로써 시민들의 투표권이 기만되거나, 조작될 위험성에 대처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입법자는 선거와 관련된 토론의 투명성과 선거의 진실성의 원칙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49) 둘째로, 고등시청각위원회의 중단권은, 대통령, 하원의원총선거, 상원의원선거(보궐선거는 제외됨)가 있는 달의 첫째 날 이전부터 실제로 선거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3개월의 기간 동안 행사될 수 있다.

(50) 게다가, 고등시청각위원회의 중단권은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가 “선거의 진실성을 변질시킬 수 있는 거짓 정보를 고의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만 행사될 수 있다. 거짓 정보의 개념은 판시이유 21¹³⁾에서 규정한 부정확하거나 거짓된 주장 또는 비난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선거 기간 동안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의 배포를 중단시키는 어떤 조치의 결과를 고려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주장 또는 비난은 그 부정확하거나, 기만적

13) 본문에서는 (20)에 해당됨.

인 성격 또는 선거의 진실성을 왜곡할 위험성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이와 같은 조치를 정당화할 수 없다.

(51) 다른 한편으로는, 중단절차가 시작되는 경우에, 고등시청각위원회는 이와 같은 중단을 정당화하는 이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당사자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48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중단결정은 당사자에게 이유가 기재되어 통지되며, 당사자는 중단결정을 행정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

(52) 따라서, 판시이유 제5114)에서 실시한 유보 하에,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33-1-1조는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8조에 대하여]

(53)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42-6조¹⁵⁾를 규정하는 정보조작대처법률 제8조는 고등시청각위원회가 할당하는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는 망을 통해 배포되고, 고등시청각위원회와 체결된 협약에 규정된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에 적용된다.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42-6조 첫 번째 문단은 체결된 협약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가 거짓정보의 배포를 통해 국가의 기본적 이익(여기에는 제도의 정상적 기능이 포함됨)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고등시청각위원회가 통지 후에 외국에 의해 통제된 또는 외국의 영향 하에 있는 법인과 체결된 협약에 대한 일방적인 해지를 할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42-6조 두 번째 문단은 이와 같은 침해를 평가하는 데

14) 본문에서는 (50)에 해당됨.

15)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42-6조 “고등시청각위원회는 통지 후에 체결된 협약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가 특히 거짓 정보의 방송을 통해 국가의 기본적 이익(여기에는 제도의 정상적 기능이 포함됨)에 대한 침해를 하는 경우에 본 법률 제33-1조 I의 적용에 따라 상법전 제L.233-3조의 의미로 외국에 의해 통제된 또는 외국의 영향 하에 있는 법인과 체결된 협약에 대한 일방적인 해지를 선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침해를 평가하기 위해, 고등시청각위원회는 자신이 협약을 체결한 회사, 그 회사의 자회사, 회사를 통제하는 법인 또는 이 법인의 자회사가 전자적 방법을 통해 다른 공공통신서비스에 대해 편집하는 내용(콘텐츠)을 고려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고등시청각위원회의 결정은 이와 같은 내용에만 근거하여 자신의 결정을 할 수 없다.”

있어서, 고등시청각위원회가 자신이 협약을 체결한 회사, 그 회사의 자회사, 회사를 통제하는 법인 또는 이 법인의 자회사가 전자적 방법을 통해 다른 공공통신서비스에 대해 편집하는 내용(콘텐츠)을 고려할 수 있지만, 고등시청각위원회의 결정은 이와 같은 내용에만 근거하여 자신의 결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54) 청구인들은 i) 특히 거짓정보의 배포를 통한 제도의 정상적 기능의 침해에 대한 규정은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명확하지 않고,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ii) 고등시청각위원회가 선언하는 협약해지는 통지 이후의 당사자의 행동에 대한 고려가 없으며, 대심절차가 선행하지 않았으며, 효과적인 소송에 대한 권리도 침해하였으며, iii)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42-6조는 외국에 의해 통제되는 회사 또는 영향력 하에 있는 회사와 체결된 협약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다른 회사와 체결된 협약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 앞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55) 또한, 청구인들은 제재를 받는 회사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음모에 의해서 고등시청각위원회가 해지를 선언할 수 있다는 점은 형벌의 자기책임의 원칙(*principe de personnalité des peines*)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 표현 및 통신의 자유의 침해와 관련하여

(56) 첫째로,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42-6조는 외국에 의해 통제를 받거나, 영향력 하에 있는 어떤 사람이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서비스를 수단으로 특히 거짓 정보를 배포함으로써 국가의 기본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처벌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42-6조는 국가의 기본적 이익의 보호에서 핵심적인 헌법적 요청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57) 둘째로, 판시이유 2116)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거짓정보의 개념은 부정확하거나 거짓된 주장 또는 비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에,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42-6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동의 적법성에 대한 불확실함은 없다. 제도의 정상적인 기능에 대한 침해의 개념 또한 어떠한 모호함이 없다.

(58) 따라서,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배척되어야 한다.

- 1789년 인권선언 제16조의 위반과 관련하여

(59) 1789년 인권선언 제16조는 “권리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분립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다. 1789년 인권선언 제16조를 통해 당사자가 효과적인 소송권을 행사할 권리, 공정한 소송에 대한 권리, 대심의 원칙이 보장된다.

(60) 한편으로, 입법자는 고등시청각위원회는 “통지 후에 일방적으로 협약의 해지를 선언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통지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이와 같은 통지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만 제재가 선언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이와 같은 조치는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9조에 따라) 개정된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42-7조가 규정하는 대심절차에 따라 선언된다. 마지막으로, 협약의 해지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질 수 있다.

(61) 따라서, 1789년 인권선언 제16조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배척되어야 한다.

- 자기책임의 원칙의 위반과 관련하여

16) 본문에서는 (20)에 해당됨.

(62) 1789년 인권선언 제8조는 “법률은 완전히 그리고 명백히 필요한 형벌만을 규정하여야 하며, 어느 누구도 범죄행위 이전에 제정 및 공포되고, 합법적으로 적용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한다. 1789년 인권선언 제9조는 모든 인간은 “유죄로 선고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규정으로부터 누구든지 자신의 행위만 처벌받는다는 원칙이 도출된다. 이와 같은 원칙은 형사법원에 의해 선고되는 형벌뿐만 아니라, 처벌적 성격을 가지는 일체의 제재에도 적용된다.

(63) 형법의 영역 이외에 적용된 자기책임의 원칙은 제재의 성격 및 제재의 목적에 의해 정당화되고, 제재의 목적에 비례적인 경우에 수정될 수 있다.

(64) 첫째로, 고등시청각위원회의 결정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등시청각위원회에게 이와 같은 협약을 체결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 의한 또는 문체의 협약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에 대해 배포된 내용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입법자는 제재절차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에 의한 국가의 기본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외국에 의해 관련되고, 실행되는 여러 회사를 연루시키는 어떤 전략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련의 표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자 하였다.

(65) 둘째로,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42-6조는 침해를 평가하기 위해, 고등시청각위원회는 자신이 협약을 체결한 회사, 그 회사의 자회사, 회사를 통제하는 법인 또는 이 법인의 자회사가 전자적 방법을 통해 다른 공공통신서비스에 대해 편집하는 내용(콘텐츠)을 고려하도록 하며, 이들 회사는 이와 같은 점에서 행동의 협의를 추정하게 할 수 있는 이익공동체를 구성한다. 그리고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42-6조는 고등시청각위원회의 해지결정이 이와 같은 내용만을 근거로 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66) 따라서 외국에 의해 실시될 수 있는 전략을 고려한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42-6조 두 번째 문단은 자기책임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67) 그리고 위에서 실시한 내용에 따라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42-6조는 다른 헌법적 요청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헌법에 합치한다.

[제11조에 대하여]

(68) 정보조작대처법률 제11조¹⁷⁾는 선거법전 제L.163-1조에서 언급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공적 질서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거나, 선거의 진실함을 왜곡시킬 수 있는 거짓 정보의 배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책임을 부과한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 서비스의 사용자들에게 이와 같은 거짓 정보에 주의를 환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특히 알고리즘의 투명성, 거짓 정보를 대량으로 전파하는 계정에 대한 대처를 위한 보충적인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69) 청구인들은 i)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플랫폼에서 배포되는 정보의 거짓된 성격을 평가할 의무를 부과하는 제11조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광의의 “거짓 정보”의 개념을 채택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으며, 이는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17) 정보조작대처법률 제11조 “ I. 선거법전 제L.163-1조 제1항에서 언급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공적 질서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거나,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법률(n°86-1067) 제33-1-1조 제1항에서 언급된 선거의 진실함을 변질시킬 수 있는 거짓정보의 유포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한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특히 거짓정보가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촉진된 내용(콘텐츠)에서 유래된 경우에, 자신들의 사용자들이 거짓 정보에 주의를 환기할 수 있게 하는 쉽게 접근가능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충적인 조치를 실시한다. 1° 자신의 알고리즘의 투명성, 2° 기업, 언론 및 시청각 통신서비스 기관에서 유래한 내용(콘텐츠)의 촉진, 3° 대량으로 거짓 정보를 전파하는 계정에 대한 대처, 4° 개인의 신분 또는 공익적 토론에 관련된 정보내용의 촉진을 대가로 사례금을 지불하는 법인의 상호, 소재지, 사회적 목적에 대한 사용자의 정보, 5° 내용(콘텐츠)의 배포의 성격, 기원 및 방법에 대한 사용자의 정보, 6° 미디어와 정보에 대한 교육. 이와 같은 조치와 이와 같은 조치를 위해 사용되는 수단은 공개된다. 각각의 사업자는 매년 고등시청각위원회에 이와 같은 조치의 실시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신고를 한다. II. 본 조는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윌리스푸투나제도, 뉴칼레도니아, 프랑스령 남부와 남극 지역에 적용된다.”

ii) 정보조작대처법률 제11조는 기업의 자유, “정보에 대한 권리”(droit à l’information), 법률에 대한 접근가능성 및 이해가능성, 사상 및 견해의 흐름의 다원주의라는 헌법적 가치의 목적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표현 및 통신의 자유의 침해와 관련하여

(70) 첫째로, 입법자는 정보조작대처법률 제11조를 규정함으로써 공적 질서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고, 선거와 관련된 토론의 투명성 및 선거의 진실성 원칙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71) 둘째로, 거짓 정보의 개념은 판시이유 2118)에서 실시한 부정확하거나 거짓된 주장 또는 비난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거짓 정보의 개념은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의무의 효력에 대한 어떠한 불확실함을 초래하지 않는다.

(72) 마지막으로, 거짓 정보의 배포를 막기 위해 실시될 수 있는 조치들 가운데, 그 자체로는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는 내용에 관한 정보전달, 투명성 또는 주의 환기를 위한 조치가 있다. 이와 같은 동일한 목적 - 특히 거짓 정보를 대량적으로 유포하는 계정을 막기 위한 조치 - 을 위해 채택될 수 있는 다른 보충적 조치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판사가 개별 사건에서 이와 같은 조치의 필요성, 적합성, 비례성을 심사한다.

(73) 따라서,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배척되어야 한다.

- 기업의 자유의 침해와 관련하여

(74) 정보조작대처법률 제11조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이 정하는

18) 본문의 (20)에 해당됨.

방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거짓 정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할 수 있게 하는 접근가능하고, 가시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자신의 알고리즘의 투명성, 대량으로 거짓 정보를 전파하는 계정을 막기 위한 보충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또한 이를 위해 사용된 조치 및 수단을 공개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입법자는 이와 같은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공적 질서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고, 선거와 관련된 토론의 투명성 및 선거의 진실성 원칙에 대한 존중이라는 목적과 관련하여, 기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하지 않았다.

(75) 앞에서 실시한 내용에 따라, 정보조작대처법률 제11조는 법률에 대한 접근가능성 및 이해가능성 및 사상 및 견해의 흐름의 다원주의라는 헌법적 가치의 목적 및 다른 헌법적 요청 또한 위반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보조작대처법률 제11조는 헌법에 합치한다.

[기타 규정에 대하여]

(76)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문제가 헌법에 합치되는지에 대해서 직권으로 제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결정에서 심사되지 않은 다른 법률규정의 헌법합치성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

3. 주문

제1조 선거법전 제L.163-2조는 판시이유 23¹⁹⁾에서 실시된 유보 하에 헌법에 합치되며,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법률(n°86-1067) 제33-1-1 조는 판시이유 51²⁰⁾에서 실시된 유보 하에 헌법에 합치한다.

19) 본문 (22)에 해당됨

20) 본문 (50)에 해당됨

제2조 선거법전 제L.112조 및 제L.163-1조,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법률(n°86-1067) 제33-1조 I의 마지막 두 개의 항, 제42-6조, 제42-10조의 두 번째 항, 정보조작대처법률 제11조는 헌법에 합치한다.

제3조 본 결정은 공화국 관보에 공고된다.